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대행사업협약서

공주시와 충남연구원은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명 :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금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사업기간 : 2020. 05. ~ 2021. 07.(15개월)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공주시(이하 “갑”이라 한다.)가 충남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을”이 이행해야 할 조건 등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약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본 협약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사업은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여건 기초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등 분석
2.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3. 기본계획 수립
4.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5. 그 밖에 공주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0. 05월 ~ 2021. 07월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혹은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조 건)

“을” 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서(도면 포함)를 제출하도록 한다.
2.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은 우리시와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 등과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3. 사업추진과정은 수시로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의 성과품은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5. 사업의 최종 검수 시에는 우리시 감독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등을 실시한다.
6.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 할 수 없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을” 은 협약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업비를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내용,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갑” 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도 “을” 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8. 기타 조건 : 사업결과에 있어 “갑” 과 “을” 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저작권은 “갑” 의 소유로 하되, “을” 측이 비영리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료 요구시 “갑” 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1. “갑” 은 사업 지원금으로 금400,000,000원(금사억원)을 “을” 에게 지급한다.
2. “갑” 은 협약체결 후 “을” 에게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을”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3. 사업비는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4.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회계 관련 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다.
5. “갑”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필요시 일부 종료된 사업 또는 분기별 중간 정산을 요구 할 수 있다.
6. “을” 은 사업기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물 일체와 함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증빙서 첨부)를 “갑” 에게 제출한다.
7. “을” 은 사업비 중 발생한 잔액과 이자분에 대해서는 “갑” 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면책)

“갑” 과 “을” 은 상호 성실히 본 약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양측의 손해 배상과 면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서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상호 배상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그 책임이 면제된다.
3. 본 협약서상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갑”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7조(협약변경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과 “을” 이 양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부칙)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측 당사자가 합의,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체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4월 일

“갑”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주시장 김 정 섭 (인)



“을”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재)충남연구원

(재)충남연구원장 윤 흥 (인)

